

학교규칙 신·구 대조표

변경 전	변경 후	비고
<p>제1조(목적) 본교는 초·중등교육법 제 38조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보통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학교규칙은 초·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능교초등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
<p>제5조(학년·학기)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, 제 1학기는 3월 1일부터 여름방학 마지막일까지, 제 2학기는 개학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</p>	<p>제5조(학년·학기) -----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,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, -----</p>	
	<p>제6조(휴업일) ⑤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.</p>	신 설
<p>제8조(학생정원) 본교의 학생정원은 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.</p>	<p>제8조(학생정원)-----전라북도교육청이 정하여 통보한 학생정원으로 한다.</p>	
<p>제11조(교외체험학습)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출원에 의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 할 수 있으며,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.(체험학습 기간 및 절차, 출석인정범위는 '전라북도 체험학습 추진지침'에 따른다.)</p>	<p>제11조(교외체험학습) ①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및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의거 학교간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으며, 그 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한다.</p> <p>②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연 30일 이내의 교외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으며, 국내·외 구분 없이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나,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으로 인한 초과 일은 학교장의 판단에 의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.</p> <p>③ 기간은 횡수에 관계없이 공휴일, 방학,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.</p> <p>④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·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.</p> <p>⑤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(토·일 및 공휴일 제외)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3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한다.</p> <p>⑥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.</p>	
	<p>제12조(출결처리) ① 학생이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.</p> <p>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천재지변, 법정 감염병(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) 2.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각종 대회 및 행사 참여 3. 전출·입으로 인한 소요 일수 4.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 	신 설

	<p>는 경우</p> <p>5. 가족 및 친·인척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 일수</p> <p>6.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, 초·중등교육법 제28조 제6항,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4조, 경찰청 소년업무규칙 제31조에서 33조에 따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</p> <p>7.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</p>	
<p>제14조(편입학) ③ 편입학 아동의 학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정의 평가와 교과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년을 배치할 수 있다.</p>	<p>제15조(편입학) ③ 학교장은 정원으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 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.</p>	
<p>제19조(학급단위 자치활동)</p> <p>① 어린이들의 자치능력 신장을 위한 기초로서 학급마다 학급 자치활동을 실시한다.</p>		삭 제
<p>제20조(학교단위 자치활동)</p> <p>① 학급 어린이회의 기초 위에서 3학년 이상 학생이 참여하는 전교 어린이회를 조직·운영한다.</p> <p>② 전교 어린이회의 조직 및 운영은 별도의 계획에 의한다.</p>	<p>제24조(학교단위 자치활동)</p> <p>① 어린이들의 자치능력 신장을 위한 기초로서 전교생이 참여하는 ‘다모임’을 조직·운영한다.</p> <p>② ‘다모임’의 조직 및 운영은 별도의 계획에 의한다.</p>	
<p>제21조(전교어린이회 임원)</p> <p>① 전교단위 학생 자치회 임원으로 회장 1명(6학년), 부회장 2명(6학년 1명, 5학년 1명)을 둔다.</p> <p>③ 전교 어린이회 정·부회장은 학년도초 3월 29일까지는 선출을 완료하여야 한다. 다만 이들 임원들의 임기는 1년 또는 학기단위로 할 수 있다.</p>	<p>제25조(전교어린이회 임원)</p> <p>① ----회장 1명(6학년), 부회장 1명(5학년)----</p> <p>② ‘다모임’ 정·부회장은 3월까지는 선출을 완료하여야 한다. 다만 ----- 1년으로 한다.</p>	
	<p>제30조(시행규칙) ①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.</p> <p>② 학칙에 없는 사항은 초·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, 기타 지침, 훈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.</p>	신 설